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회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회의회장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지역들에 대하여 시차원의 다양한 분야의 국제원조(국제개발협력)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합시행계획, 사업방식, 평가, 시민참여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성격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둠 (안 제4조)

라. 국제개발협력 주관부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확정 (안 제5조)

마. 각 시행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 (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 및 지역들에 대하여 시 차원의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시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도시 및 지역)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목표를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대한 기여
6. 그 밖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시의 경제수도·문화체육관광·보건여성·환경녹지 업무관련 3급 이상 공무원

3. 국제민간기구(NGO), 환경·보건·행정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개발협력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6조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 계획

2.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개발협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3년마다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4. 국제개발협력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안의 작성) ① 각 시행부서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관련사업에 관하여 민간단체에 위탁·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는 개발도상국의 도시 및 지역들에 대하여 시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나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시행하여할 사업임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시행하여할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산업전문위원회 이한구 의원